

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,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

-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
...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·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,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, 경찰청(청장 윤희근)은 건설 유관협회,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.
 -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.
-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.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·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특히,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*들과 토론에 함께한다.
 - * 참석기관 :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, 대한건설협회·전문건설협회·전문건설공제조합, 한국토지주택공사, 타워크레인협동조합, 노무사, 시공사 등
 - 먼저,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.
 -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, 현장 계도·점검(~4.19)를 우선 추진 후, 조사·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(4.22~5.31)을 추진할 예정이다.

< 관계 부처별 역할 >

- ▶ **국토부** :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전수 조사(~3.29),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 추진
*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, 시도경찰청으로 구성
- ▶ **고용부** :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*을 중심으로 현장계도(3.20.~4.19.) 후 점검·단속(4.22.~5.31.) 추진
* ① '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, ②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, 시정명령,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, ③ 신고접수 사업장, ④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, ⑤ 언론보도·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강요 사업장
- ▶ **경찰청** : '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' 체제 돌입(3.14~), 계도기간 중 '핀셋식 단속', 이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추진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(분기별 1회)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·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.

○ 아울러,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,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·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”이라며,

○ “업계도 先(선) 준법, 後(후) 원 - 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전인재	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철	(044-201-3521)
	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	책임자	팀 장	조숙현	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	(044-201-3509)
<공동>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	구현경	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	강순형	(044-202-7443)
<공동>	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송원영	(02-3150-2626)
		담당자	경 정	최연석	(02-3150-1726)



1 그간 경과

- 지난 정권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, 지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*(21.10.~)하였으나 성과가 미흡
 - * 국조실·국토부·고용부·공정위·경찰청 합동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」 구성
- 이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건설노조 동조파업(22.12) 등 계기, 3대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개혁 추진 본격화
 - 실태조사(22.12~23.1), 전문가 현장 의견수렴(22.12~23.2, 총 12회) 등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」(23.2.21.) 수립·시행
 - T/C 고의 작업지연 등 범정부 합동 점검(23.3~4) 및 상시 점검 체계 운영(국토지방청, '23.1~) → 위반사항 적발 시 처분* 및 수사 의뢰
 - * T/C 조종사의 음주 작업, 고의 작업지연 등 10명 처분 완(면허정지 1, 경고 9)
 - 대책의 제도화를 위해 「건설현장 정상화 5법」 발의*(23.5, 민당정 협의)
 - * 「건설산업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사법경찰직무법」, 「노동조합법」, 「공정채용법」
- 대책(23.1~) 수립 시부터 건설현장 상시 점검 추진 중(매주 35개 이상)
- 한편, 경찰은 250일 특별단속(22.12.~23.8.)을 추진 → 총 4,829명 송치, 148명 구속 등 불법행위자를 엄단

2 현황 진단

◆ 업계는 정부의 대책 이후 공공연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다는 평가, 다만, 최근 음성적인 불법·부당행위의 재발 조짐을 우려 中

- T/C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(소위 'OT비') 강요
-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소위 '약점 잡기식 신고' 집중 제기
- 일부 단체가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, 위압감 조성

3 추진 방안

◆ 국조실의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* → 국토부 실태조사·점검, 고용부 채용 강요 단속, 경찰청 폭력행위 등 단속

* (1단계) 3.20.~4.19. 현장 지도, 모니터링 ⇒ (2단계) 4.22.~5.31. 집중점검·단속

◆ 업계는 불법 발생 시 적극적 신고, 자구 노력 등에 협조 당부

○ (국토부 실태 조사) 현황 파악 목적, 유관 협회 등을 통해 조사 중(~3.29)

-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유형별 집중 점검·단속 추진 예정 → 협회의 적극 홍보 및 회원사의 참여 유도 당부

< 불법행위 주요 유형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 >

유형	문제점 및 대응 방안 예시
과도한 OT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문제) 임대사의 동의 없이 조종사 개인의 이득을 위해 건설기계를 사용 (정비, 장비 수명 등 비용으로 발생) ▶ (대응) 1주52시간 초과 근무 필요 시 예비 조종사 채용 2임대사-조종사 간 근로계약 시 무단사용 금지 원칙 명시, 3장비 무단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청구,
불법행위 집중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문제)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신고 남용 ▶ (대응) 공익적 목적이 아닌 채용 강요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신고 남용 시 채용 강요로 처벌 가능

○ (범정부 제도·단속) 실태 조사·점검 등을 위한 제도 기간(3.20.~4.19.)을 설정, 조사·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 추진(4.22.~5.31)

- (국토부)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 협의체*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 추진

*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, 시도경찰청으로 구성

- (고용부)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*을 중심으로 현장제도(3.20~4.19) 후 점검·단속(4.22~5.31) 추진

* ① '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, ②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, 시정명령,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, ③ 신고접수 사업장, ④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, ⑤ 언론보도·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강요 사업장

- (경찰청) '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' 체제 돌입(3.14~), 제도기간 중 '핀셋식 단속', 이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추진

○ (국회 협의 제도 개선) 「건설 정상화 5법*」의 입법을 지속 추진

* 「건설산업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사법경찰직무법」, 「노동조합법」, 「공정채용법」